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219 | 2024.01.22 (2024.01.15~01.21)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본회의
2. 상임(특별)위원회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18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01.15~01.21)

【정부의 주요 정책】

정부(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여 ‘세계 최대 최고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경기 평택·화성·용인·이천·안성·성남 판교·수원 등 경기 남부의 반도체 기업과 관련 기관이 밀집한 지역 일대를 의미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현재 19개의 생산팹과 2개의 연구팹이 집적되어 있으며, '47년까지 총 622조원의 민간 투자를 통한 총 16개(생산팹 13개, 연구팹 3개)의 신규팹이 신설될 예정이며, 특히 '27년에는 생산팹 3기, 연구팹 2기가 완공될 전망입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스템 반도체 시장점유율 10% 달성, ▷공급망 자립률 50% 달성 목표, ▷622조원 투자 지원 위해 산단 지속 조성 및 전력·용수 인프라 적기 공급, ▷메가 클러스터 내 3대(판교, 수원, 평택) 연구개발 교육 거점 구축 등을 담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탄소중립, 에너지 안보를 위한 에너지기술혁신 본격 추진키로 하며, 2024년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63개를 1차 공고하고, 신규과제 전체 예산 2,334억 원 중 50% 이상인 1,188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바, 올해 에너지기술개발 사업은 ▷원자력, 재생에너지, 수소 등 차세대 기술 선점, ▷에너지수요 효율화 및 공급망 안정화, ▷에너지인력 양성, 수용성 제고 등 혁신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투자전략 및 제도혁신 방안’을 발표하여 ▷보조금 성격의 연구개발(R&D) 지원은 중단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도전적 연구개발(R&D)에 지원 집중, ▷시장성과 극대화를 위해 대형과제 중심 사업체제로 개편, ▷연구개발(R&D) 프로세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미래세대가 세계적인 연구자로 성장하도록 지원 등 4개 혁신방안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선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를 '24년에 본격 시행키로 하였으며, 개인정보 권리 침해에 당한 국민의 피해 구제가 신속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분쟁조정 의무참여제 실시, 분쟁조정사건의 사실조사권 도입, 조정안에 대한 수락간주제 시행 등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입법(행정)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변조 또는 도용으로 PC방 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인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하고, PC방 사업자의 준수사항 신설에 따라 이를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조항을 신설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는 석면건축자재로부터 어린이의 건강보호를 위해 소규모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건축물석면조사를 의무화하고 자연발생석면 관리계획 수립 시 석면이 함유된 암석을 채취·판매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관리방안을 포함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는 역세권개발사업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개발구역 지정 단계에서 시행하던 지방의회 의견 청취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가 실시계획 승인 단계로 변경되었으므로 개발구역 지정 단계에서 지방의회 의견 청취 및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조문을 삭제하는 등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를 등록면허세 비과세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려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른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은 전기공급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의 성격을 띠고 있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은 해당 협회를 설립한 손해보험회사들이 납부하는 협회비로 볼 수 있어 이 법에 따른 부담금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한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과 회수부과금은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하여 부담금운용계획서 작성 등 부담금 운용에 따른 행정부담을 경감하고자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현행법상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 비율을 현행보다 10%씩 더 상향하고, 해당 양도소득을 포함한 양도세 종합한도를 1개 과세기간별 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5개 과세기간별 한도는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해 공익에 부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공익 참여의 유인을 강화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0인)**」,

취업규칙의 내용에 자택 등 근무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근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근로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고 기업이 근로시간과 임금체계를 유연화 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2인)**」, 등이 입법 발의되거나 정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제41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1/25(목) 14시 개의 예정되어 심의안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며, 정무위에서는 “민생현안 및 정치테러사건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가 1/22(월) 10시 예정되어 있습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세계 최대 최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 발표(산업통상자원부) 6
- 탄소중립, 에너지 안보를 위한 에너지기술혁신 본격 추진(산업통상자원부) 7
- 첨단전략산업 분야 연구개발(R&D) 자금 저리 융자사업 개시(산업통상자원부) 8
- 산업 에너지 연구개발(R&D) 4대 혁신방안 추진(산업통상자원부) 9
- 모태기금(펀드) 자기금(펀드) 관리체계, 시장 친화적으로 개편(중소벤처기업부) 14
- 제1차 「소상공인 우문헌답 정책협의회」 개최(중소벤처기업부) 15
- 개선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24년에 본격 시행(개인정보보호위원회) 16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18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산업통상자원부) 18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정법률(산업통상자원부) 19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 19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20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국토교통부) 21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국토교통부) 21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국토교통부) 2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22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금융위원회) 22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24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문화체육관광부) 25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산업통상자원부) 25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산업통상자원부) 26
-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환경부) 26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환경부) 27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환경부) 27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28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29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30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31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31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3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의원 등 11인) 3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0인) 32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의원 등 11인) 33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3인) 33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 등 11인) 34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1인) 34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2인) 35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 등 10인) 35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의원 등 11인) 36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본회의
2. 상임(특별)위원회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18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01.08~01.14) [바로가기](#)

- [공정거래] 2024년 새롭게 바뀌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
- [해외규제] 미국,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 강화된 2차 제재 부과: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은 제재 컴플라이언스 강화에 대비해야
- [형사] 美 반부패법, 외국공무원도 직접 미국서 처벌
- [ESG] 주요 글로벌 ESG 규제 동향과 2024년 전망
- [환경]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
- [통상관세]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규제 움직임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세계 최대 최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 발표 - 시스템 반도체 시장점유율 10% 달성, 공급망 자립률 50% 달성 목표 - 622조원 투자 지원 위해 산단 지속 조성 및 전력·용수 인프라 적기 공급 - 메가 클러스터 내 3대(판교, 수원, 평택) 연구개발·교육 거점 구축	2024-01-15
---------	---	------------

정부는 반도체 인재양성 현장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여 세계 최대 최고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보고하고, 토론회를 통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경기 평택·화성·용인·이천·안성·성남 판교·수원 등 경기 남부의 반도체 기업과 관련 기관이 밀집한 지역 일대를 의미함. 현재 19개의 생산팹과 2개의 연구팹이 집적된 메가 클러스터에는 '47년까지 총 622조원의 민간 투자를 통한 총 16개(생산팹 13개, 연구팹 3개)의 신규팹이 신설될 예정이며, 특히 '27년에는 생산 팹 3기, 연구팹 2기가 완공될 전망이다

메가 클러스터는 2,102만m² 면적에 '30년 기준 월 770만장의 웨이퍼를 생산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세계 최대 규모로 정부와 기업은 연관 소재 부품 장비 기업, 공공 반도체 연구소, 팹리스, 인재를 양성하는 다수의 대학들이 위치한 메가 클러스터에 HBM 등 최첨단의 메모리 생산과 2nm 이하 공정 기반 시스템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여 세계 최고의 반도체 생산기지를 조성할 예정임. 팹 신설은 그 직접적인 경제효과는 물론 소부장 팹리스 등 협력기업 생태계의 동반성장과 650조원의 생산 유발효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메가 클러스터 내 팹 건설이 시작되면 팹에 들어가는 장비 생산과 원자재 제조업체의 생산도 함께 늘어 약 193만명의 직접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하고 주변 지역 상권이 활성화됨과 동시에 도로·전력·공업용수 등 인프라 건설이 확대되면서 약 142만명의 간접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여기에 더해 16기의 신규 팹이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면, 반도체 칩 제조기업은 팹 운영 전문인력을 약 7만명 이상 새로 고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반도체 팹에 필요한 소재·부품·장비를 공급하는 협력업체의 매출도 약 204조원 가량 증가하면서 4만여개의 일자리가 늘어나게 된다. 결국 팹 운영 과정에서도 총 11만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종합하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내 622조원의 팹 투자는 팹 건설·운영 과정을 거치면서 총 346만명의 직간접 일자리를 새로 만들며 민생을 살찌울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처럼 경제성장·일자리와 직결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을 더욱 가속화하고, 올해 반도체 수출 1,200억불·민간투자 60조원 이상을 달성할 계획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메가 클러스터 인프라 투자환경 조성**
 - 전력 용수 등 핵심 인프라 적기 공급
 - 매력적인 투자환경 조성
- ② **민생과 함께하는 튼튼한 반도체 생태계**
 - 소부장 패리스 경쟁력 제고를 통한 국내 반도체 밸류체인 완성
 - 글로벌 반도체 동맹 기반 공급망 강화
- ③ **AI 시대를 주도할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
 - **(판교)** 저전력 고성능 AI 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추진
 - **(수원)** 화합물 반도체 전주기 지원으로 4대 전략분야 육성
 - **(평택)** KAIST 차세대 반도체 R&D 허브 조성
 - 국내 외 반도체 연구 인프라(나노팜) 연계·협력체계 구축
- ④ **미래 반도체를 이끌어갈 우수 인재 양성 및 해외 인재 유치**
 - 수요 맞춤형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
 - 해외 우수인재 유치 및 교류 활성화

< 메가 클러스터 >



산업통상자원부

탄소중립, 에너지 안보를 위한 에너지기술혁신 본격 추진

- '24년 1차 에너지기술개발 신규과제 63개에 대해 1,188억 원 지원

2024-01-15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63개를 1차 공고하고, 신규과제 전체 예산 2,334억 원 중 50% 이상인 1,188억 원을 지원함

올해 에너지기술개발 사업은 ▷원자력, 재생에너지, 수소 등 차세대 기술 선점, ▷에너지수요 효율화 및 공급망 안정화, ▷에너지인력양성, 수용성 제고 등 혁신기반 마련에 중점을 둠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원자력, 재생에너지, 수소 등 무탄소 에너지원에 약 458억 원 투자**
 - 차세대 원전 핵심기술 개발 및 부품·장비 국산화, 신재생에너지 기술 고도화 추진
- ②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안보 확립과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원개발, 에너지 효율, 안전 등에 약 586억 원 투자**
 - 에너지산업의 핵심자원인 리튬 추출 및 소재화, 중소·중견기업 제조공정 효율향상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위기 대응능력 강화
- ③ **에너지 혁신기반조성에 약 144억 원 투자**
 - 향후 예측되는 에너지 전문인력 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에너지 산업과 연계한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전략산업 분야 연구개발(R&D) 자금 저리 융자사업 개시 - 중소 중견기업 대상 900억 원 규모, 1%대 저금리 지원

2024-01-15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초격차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900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사업의 지원대상 기업을 1.15일부터 모집함

동 사업은 올해부터 신설된 사업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중소 중견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기업당 최대 50억 원의 연구개발(R&D) 자금을 1.84% 금리(‘24.1분기 기준)로 지원받을 수 있음. 상환방식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방식이 적용됨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이달 말까지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되며, 1차 적합성 평가, 2차 대출심사의 단계를 거쳐 적격기업으로 선정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실제 융자는 산업부에서 동 사업의 취급은행으로 선정된 전국 13개 시중은행*을 통해 이뤄지며, 담보 여력이 낮은 기업의 경우 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 상품을 통해 10~15%p 상향된 보증한도로 보증서를 발급 받는 것도 가능함

*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KDB산업은행, 제주은행, BNK경남은행, BNK부산은행, DGB대구은행, 기업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1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을 중심으로 사업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며, 동 사업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산업부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사업공고문**을 참고하면 됨

동 사업은 그간 출연 일변도의 정부 연구개발(R&D) 지원 방식과 달리 융자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해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고 시장 중심의 연구개발(R&D)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산업부는 올해 900억 원을 시작으로 향후 4년간 총 3,900억 원(잠정) 규모로 융자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 에너지 연구개발(R&D) 4대 혁신방안 추진

2024-01-18

산업 에너지 기술개발사업이 고위험 차세대 대형 과제 중심으로 재편되고, 기업의 현금부담이 대폭 완화되는 한편, 기업과 연구자가 과제 기획과 운영의 전권을 행사하는 수요자 중심의 프로세스로 전환됨

산업통상자원부는 「R&D 혁신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투자전략 및 제도혁신 방안’을 발표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보조금 성격의 연구개발(R&D) 지원은 중단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도전적 연구개발(R&D)에 지원 집중**
 - 10대 게임체인저 기술 확보(알키미스트 시즌2)를 위한 1조원 규모 예타를 추진하고, 산업 난제 해결을 위한 과제들에 매년 신규 예산의 10% 이상을 투입하여 고난도, 실패용인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비중을 현재 1%에서 5년 내 10%로 확대
 - 40대 초격차 프로젝트에는 신규 예산의 70%를 배정하여, ‘24년 민관합동 2조원(정부 1.3조원) 투자
- ② **시장성과 극대화를 위해 대형과제 중심 사업체제로 개편**
 - 100억 원 이상 과제 수를 ’23년 57개에서 금년 160개로 대폭 확대하고, 우수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비 중 기업 현금부담비율 인하(최대 45%p), 과제 비공개, 자체 정산 허용 등 기업 부담을 대폭 낮춰줌
- ③ **연구개발(R&D) 프로세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 품목지정 방식을 전면 도입하여 정부는 도전적 목표만 제시하고, 기업과 연구자가 과제기획 주도
 - 주관기관에 컨소시엄 구성, 연구비 배분 권한을 부여하는 Cascading 과제를 10개 이상 시범 도입
 - 연구개발(R&D) 평가에 시장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투자연계형 연구개발(R&D)을 대폭 확대하는 등 연구개발(R&D)사업이 시장 수요를 적기에 반영하도록 개선
- ④ **미래세대가 세계적인 연구자로 성장하도록 지원**
 -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을 8개 추가(現 3개)하는 등 인력양성 투자 강화(’23)2,062→(’24)2,294억원)
 - 국제공동연구시 해외 파견연구를 지원하고, 신진연구자의 연구개발(R&D) 참여 확대 및 연구자 창업규제 혁파를 통해 스타 연구자 성장기반 강화

<산업 에너지 투자전략 및 제도혁신 방안>

현장 의견 수렴 및 4大 혁신방향



< 산업 에너지 투자전략 및 제도혁신 방안 >

**도전적 차세대 기술에 투자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해
파급력 있는 시장 성과를 만들겠습니다.**

**초격차 산업 경쟁력 확보**

- 40대 프로젝트
'24년 민관 2조원 투자

도전·혁신적 연구 확대

- 10대 게임체인저 기술개발
7~10년간 1조원('24 예타)
- 산업난제 해결 기술 확보
신규과제 예산 10% 이상('25~)

글로벌 혁신기업 육성 지원

- 기업주도 CVC 펀드 조성
'24년 2.4조원
- 저리(1.84%) 융자 R&D 도입
'24년 900억원

01
**고위험 차세대 기술
집중 투자**

**대형 사업·과제로 재편**

- 소규모 사업
미션 중심
통폐합
280개 ('23) → 230개 ('24)
- 대형 통합형
과제 3배 확대
57개 ('23) → 160개 ('24)

선예산 확정 후 과제기획

- 프로그램 사업 확대 58% > 71.8%
- 공고확대·상시지원 연1회 > 연3회

수요기업 역할 강화

- 기업현금부담비율* 10~45%p 인하
* (대) 60→15% (중) 50→13% (소) 40→10%
- 비공개 확대
- 연구비 지출 자율성 강화

글로벌 공동연구 확산

- 해외에 R&D 참여 개방,
6개 협력센터 구축
- 우수연구기관과 전략적 공동연구

기업·연구자 주도 과제 기획

- 품목지정 원칙 전환
(정부)품목 > (기획)기업·연구자
- 무기명 Peer Review 도입

주관기관 권한 강화

- 과제운영 전권 부여(Cascading)
* 공동연구기관 구성, 연구비 배분
- '24년 신규 10개 이상 추진

시장 중심 평가

- 시장·산업전문가 참여확대
- 민간투자연계형 3배 확대
('23) 365 > ('24) 1,100억원

성과창출 지원 강화

- PD에 성과관리 권한·책임 부여
- 전문가관 기능·조직 개편

02
**시장성과 극대화 하는
사업체계**



03
**수요자 중심 R&D
프로세스**



04
**사람을 키우는
R&D**

**미래인재 양성 투자 확대**

- 현장수요 기반 고급인재 양성
('23) 2,062억원 > ('24) 2,294억원
- 첨단전략산업 특성화 대학원 8개 추가

글로벌 인재 성장기반 마련

- 국제공동연구시 연구인력 파견
* 연구비 외 체류비 지원
- 해외 현장교육 프로그램 운영
* (한·미) 1,923명, (한·네) 500명

신진연구자 성장사다리 구축

- R&D 전주기 참여 촉진
* 기획위원회, 선정평가 위원회 등
- 석·박사생 연구 몰입 환경 조성
* 연구비 사용 증빙 간소화행정전담 인력 제도 확산

<'24년 중점 투자 R&D>





중소벤처기업부는 모태기금(펀드) 자기금(펀드) 관리보수 산정 기준이 되는 「손상차손 지침(가이드라인)」을 5년 만에 전면 개정하였다는데, 이는 「벤처투자 활력제고 방안('23.10.5)」 후속조치로,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이 벤처투자 회복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모태기금(펀드) 자기금(펀드) 관리체계를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 업계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개편한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상장 과정에서 회계기준 변경으로 기업이 일시적으로 자본잠식에 머무르게 된 경우, 관리보수를 삭감하지 않도록 예외사유 규정

- 벤처투자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인 상환전환우선주(R씨(C)PS)는 통상 비상장 기업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일반기업회계기준, K-G에이(A)에이(A)P)에서는 자본으로 인식되는 한편,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회계기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에서는 부채로 인식됨
- 상환전환우선주 형태로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이 상장할 경우 회계기준 변경으로 일시적으로 부채가 증가하여 자본잠식에 머무를 수 있음
- 기존 지침(가이드라인)에서는 자본 전액이 잠식된 경우 예외 없이 관리보수를 삭감하였으나,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일시적인 자본잠식의 경우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의 관리보수를 삭감하지 않도록 예외사유를 명확히 함

② 자본잠식 기업 등이 유의미한 후속투자*를 유치한 경우, 후속투자 가치를 기준으로 관리보수를 회복하도록 규정하여, 관리보수 회복 수준 현실화

- * (투자자) 기관투자자(벤처투자회사 등), 법인 등, (투자형태) 지분투자, (투자금액) 피투자기업 지분율 3% 이상(동반투자 포함)
- 기존에는 관리보수 회복 수준을 '순자산가치×지분율'로 일괄 규정하여, 미래 기업가치 상승을 고려한 후속투자가 이루어졌음에도 미미한 수준의 관리보수 회복이 이루어짐
- 유의미한 후속투자가 이루어진 경우, 관리보수 지급 기준이 되는 투자 잔액*을 후속투자단가로 산정하도록 개선
- * 투자 집행액 중 아직 회수되지 않은 자산으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산정

<자본잠식 피투자기업의 후속투자 유치에 따른 관리보수 회복 수준 비교>

■ **(사례)** 에이(A)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의 투자 이후 자본잠식된 비(B)사가 후속투자(씨(C)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를 유치한 경우

- 에이(A)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이 비(B)사에 10억원 투자 (주당 10만원, 10,000주, 지분율 10%) ('19.11)
- 비(B)사가 결손금 누적으로 자본전액잠식('21.12)
- 씨(C)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이 비(B)사에 20억원 투자(주당 8만원, 25,000주, 지분율 20%) ('22.04)
- : 에이(A)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 지분율 8% (10,000주/125,000주)
- 비(B)사 자본잠식 해소 (순자산가치 20억원) ('22.12)

■ **(관리보수 회복 수준 비교)** 관리보수 지급 기준이 되는 투자잔액이 5배 증가

- **(개정 전(前))** 투자잔액 = 순자산가치 × 지분율 = 20억원 × 8% = 1억 6000만원
- **(개정 후(後))** 투자잔액 = 후속투자단가 × 주수 = 8만원 × 10,000주 = 8억원

③ 관리보수 삭감 회복 기준 및 시점을 명확화하여 시장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일관된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 기존 지침(가이드라인)은 회계법인별로 기준을 상이하게 해석하여 적용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삭감·회복 기준을 구체화하고 반영 시점을 연말 시점으로 명확하게 규정함

④ 모태기금(펀드) 사후관리 단계에서도 민간 전문가, 벤처투자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사후관리 체계 전반 개편

- 지침(가이드라인)에 따른 관리보수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지침(가이드라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경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모태기금(펀드) 사후관리위원회’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함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 개최

2024-01-16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전통시장 관련 협 단체 대표들과 함께 제1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진행한 바, 이는 ‘소상공인 정례협의체’ 운영을 이행하기 위해 새롭게 구성한 것으로, 소상공인 업계를 대표하는 협·단체들이 참여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나누고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임

처음으로 개최된 정책협의회에서는 역대 최초로 만들어진 중기부와 소상공인 업계 사이의 정기적인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참석자 모두 정책협의회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짐

앞으로 정책협의회를 매월 또는 격월로 개최하여 소상공인과의 만남과 소통을 계속 이어가고, 정책협의회에서 나온 애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함

이후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영여건 극복을 위해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지원 등 정부가 마련한 ‘2024년 달라진 소상공인 정책’ 8가지를 안내하고, 생업 현장에서 느끼는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짐

특히, 설을 앞두고 민생안정과 소상공인 내수 활성화를 위해 개인이 한달에 구매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한도를 올해 상시적으로 인당 50만원으로 높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부 소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8조원의 융자·보증을 신속하게 공급한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적극 활용할 것을 안내함

2024년 달라지는 소상공인 주요 정책 내용으로는

① 126만 소상공인의 에너지 부담 경감을 위한 전기요금 지원사업 신설

- 매출액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

- 공모전을 통해 각 분야에서 입상을 하는 경우 상장(대상 방통위원장상 등)과 상금을 수여하고 위치정보 사업 등록·신고, 비즈니스 모델 분석 및 진단, 국내·외 투자유치, 비즈니스 네트워킹, 특허출원 등에 걸쳐 기업 특화 맞춤형 컨설팅 등을 제공받게 됨

②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8천억원 규모 자금 지원

- 소진공 : 7% 고금리 대출을 4.5% 저금리 대출로 전환(5천억원)
- 제2금융권 : 5~7% 대출금에 대해 최대 150만원 이자비용 지원(3천억원)

③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규모로 발행하고, 사용처 구매한도도 대폭 확대

-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확대 ('23. 4조원 → '24. 5조원)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 ('23. 20만개 → '24. 25만개 → '25. 30만개)
- 온누리상품권 월 구매한도 50만원 인상(최대 200만원)

④ 대국민 소비촉진 캠페인 '동행축제'를 연(年) 3회 개최하여 매출증대 기반 마련

- 동행축제 매출성과 : ('23.실적) 3.9조원 → ('24.목표) 4조원

⑤ 4만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료를 최대 80% 지원하여 사회안전망 확충

- 고용보험료 지원규모 : ('23) 2.5만명, 최대 50% → ('24) 4.0만명, 최대 80%

⑥ 노란우산공제금 지급사유를 폐업에서 재난 질병 등까지 확대

- 지급사유 : (현행) 폐업, 사망, 퇴임, 노령 → (추가)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⑦ 57만 영세 소상공인 대상 선지급된 1 2차 재난지원금 환수금을 면제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1.9.)

⑧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등 소상공인 전통시장 대상 세제지원 대폭 확대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현(現) 8,000만원) 상향,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 40 → 80% 인상 ('24. 상(上))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선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24년에 본격 시행

- 분쟁조정 의무참여제, 사실조사권, 조정안 수락간주제로, 개인정보 권리침해에 대해 신속·효율적 피해구제 가능

2024-01-17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4년은 분쟁조정 의무참여제 등이 본격 시행되는 원년으로, 분쟁조정제도 개선을 통해 개인정보 권리 침해에 당한 국민의 피해구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힘

주요 내용으로는

① 분쟁조정 의무참여제 실시

- 개인정보 분쟁조정이 접수되면 분쟁조정 상대방 중 공공기관만 분쟁조정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였던 것을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분쟁조정에 반드시 응하도록 “개인정보 분쟁조정 의무참여제”가 실시됨

② 분쟁조정사건의 사실조사권 도입

- 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현장 사실조사권을 신설하여 기존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와 설명에만 의존하던 것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관련 자료를 조사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함

③ 조정안에 대한 수락간주제 시행

- 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알리지 아니하면 조정안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던 것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여,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임
- 분쟁조정 당사자는 조정안에 대한 거부 의사가 있을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 반드시 알려야 함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내용	시행일자
기획재정부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2024-01-19 시행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공급부족 우려를 해소하고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대파는 2024년 1월 19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바나나 및 망고 등 24개 물품은 2024년 1월 19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0퍼센트부터 10퍼센트까지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제71조, 별표 4, 별표 5 신설, 별표 6 신설)

산업통상자원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2024-07-17 시행예정
---------	---	-----------------

법률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영구법으로 전환하고, 공급망 안정과 관련된 사업재편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간이합병 등에 대한 특례 적용요건이 되는 보유주식 기준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80에서 3분의 2로 완화하고, 사업재편 유형별 계획기간 차이를 고려하여 3년으로 규정된 지주회사 등 규제에 대한 특례 기간을 최대 5년간 부여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한편,

「상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재편지원협의회 운영 및 사업재편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제1조, 제2조제4호, 제4조제1항제1호, 제6조제5항제1호, 제6조제11항제4호 신설 등)

첨단산업 분야의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인재를 양성·활용·관리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관련 산업계의 수요에 맞추어 우수인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첨단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첨단산업, 첨단산업인재, 첨단산업 인재혁신, 교육기관등, 해외인재에 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함 (제2조)
- ② 첨단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 기업인재개발기관 등의 지정·지정취소, 첨단산업아카데미 지정, 인재혁신전문기업의 등록, 전문양성인의 교원 등 임용 자격기준 등의 근거를 마련함 (제4조부터 제11조까지)
- ③ 정부는 첨단산업 관련 기업, 기관 및 단체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장비, 교육연구시설 등 인재혁신 시설을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기관등에 기증·출연·임대·공동사용 등 개방·공유하도록 지원할 수 있고, 산업계의 교육과정 참여 촉진 근거를 마련함 (제12조 및 제13조)
- ④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혁신 활성화를 위하여 인재혁신센터의 설치, 첨단산업 기술인 협회 설립, 인재양성기금의 설치, 인재혁신협의체 구성, 첨단산업 인력수급분석의 작성, 위기업종의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
- ⑤ 첨단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 기업인재개발기관 등의 지정·지정취소, 첨단산업아카데미 지정, 인재혁신전문기업의 등록, 전문양성인의 교원 등 임용 자격기준 등의 근거를 마련함 (제4조부터 제11조까지)
- ⑥ 첨단산업 분야의 청년·여성 인재 양성 및 지역인재, 중소·중견기업 인재 확보를 위한 다각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 ⑦ 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국제 행사 등 해외인재 유치 협력, 해외인재유치센터 설치 등의 근거를 마련함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 두는 첨단전략기술조정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로 통합·확대 개편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첨단전략산업 등 선도사업을 선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9551호, 2023. 7. 18. 공포, 2024. 1. 19. 시행)됨

이에 따라,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에 두는 분야별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등 선도사업의 선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제9조)**

-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는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과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등을 국가전략산업위원회의 회의에 앞서 검토·조정하도록 하고,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②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에 두는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0조)**

-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에 기술, 특화단지 및 규제개선 분야별 소위원회를 두고, 기술소위원회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특화단지소위원회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해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제개선소위원회는 국가첨단전략산업 등과 관련된 규제개선 여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사전 검토하고 전문적인 조사·분석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③ **국가첨단전략산업 등 선도사업의 지원 (제38조의2 신설)**

-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국가첨단전략기술 선도사업의 선정을 받으려는 전략기술보유자는 선도사업의 추진 주체 및 기대효과 등이 포함된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및 국내외 전문인력 확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령

2025-01-17 시행예정

(다만, 제19조의4, 제38조제2항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에 기존 이륜자동차 외에 드론 및 실외이동로봇을 추가하고, 택배서비스사업의 화물 집화·배송에 드론 또는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며, 성범죄 및 강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한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운전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제5조제1항제3호 신설, 제19조제1항제4호 신설, 제19조의2~제19조의4 신설, 제38조 등)

국토교통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2024-07-17 시행예정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시설물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전문기관에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을 대행시킬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유지관리업자 대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사업자로 하여금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제10조제1항, 제18조제2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8조의2 신설 등)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2024-07-17 시행예정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가 자동차 소유자에게 결함이 있다는 사실 및 시정조치 계획을 공개하는 경우 제작결함의 내용과 부품 수급 계획 및 전용 작업 공간 확보 등 시정조치 계획 이행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사용하는 선거용 자동차 등 일시적으로 튜닝을 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튜닝승인기준과 절차를 적용하는 일시적튜닝 승인제도를 도입함 (제31조제1항, 제34조제3항, 제34조제4항 신설)

국토교통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2025-01-17 시행예정

(다만, 제8조제1항, 제18조, 제41조, 제41조의2, 제44조, 제90조, 제93조제1항, 제98조제1항, 제102조, 제104조, 제106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사업계획승인권자로 하여금 사업계획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고, 일정한 두께 이상으로 바닥구조를 시공하는 경우 건축물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주체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 및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알리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민간 주택건설관련협회가 정한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주택 감리자에게 주택건설공사의 하수급인이 시공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의무를 부여하며, 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감리비 지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공택지를 공급하기

위해 등록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검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제8조제1항제5호, 제41조제8항 신설, 제41조의2제8항, 제44조제7항 신설 등)

국토교통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4-01-19 시행

공기업, 신탁업자 등 전문개발기관이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정비구역 지정 제안 권한을 부여하고, 정비구역과 사업시행자 동시 지정,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처리 등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9560호, 2023. 7. 18. 공포, 2024. 1. 19. 시행)이 개정됨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공기업, 신탁업자 등 전문개발기관이 정비구역 지정권자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제출하는 정비구역 지정 제안서 등 해당 사업 시행과 관련한 서식을 마련하려는 것임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금융위원회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2024-10-17 시행예정

채권금융회사 등과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의 개인금융채권·채무 내용의 변동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추심·조정(調停)에 필요한 채권금융회사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금융채권·채무와 관련된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관리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 채권금융회사 등은 개인금융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주택의 경매를 법원에 신청하려는 경우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각각 그 예정일과 채무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함
- 채권금융회사 등은 개인금융채권에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존 약정에 따른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면 이행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채무조정 절차가 끝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에 대해서는 양도할 수 없도록 함

②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시 준수사항 (제14조부터 제30조까지)

- 채권추심자가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에 착수하려는 경우에는 추심 착수 예정일, 방어권 행사 방법 등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하고,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추심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함

하며, 개인금융채무자가 중대한 재난상황에 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등에는 일정 기간 추심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함

- 채권금융회사 등은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하고,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회사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인력 규모 및 전문성, 추심 관련 법령의 위반 사실 등을 평가하도록 하며, 추심업무를 위탁한 이후에는 수탁자를 지도·감독하도록 함

③ 채무조정 기준·절차 및 효력 (제31조부터 제40조까지)

- 채권금융회사 등이 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를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채무조정을 할 때 개인금융채무자의 변제능력과 개인금융채권의 회수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며, 임원·직원이 개인금융채권의 채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절차 및 기준을 정하도록 함
- 개인금융채무자가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 채권금융회사 등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채권금융회사 등은 다른 법률에 따라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만 그 요청을 처리하지 아니하고 거절할 수 있도록 하며, 채무조정 요청일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채무조정 여부의 결정 내용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 개인금융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채무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개인금융채무자가 채무조정안에 동의하였을 때에는 조정서와 같은 내용으로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④ 손해배상책임 등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 채권추심회사 등이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금융채무자나 그의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함
- 채권추심회사 등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보증금의 예탁, 보증보험증권의 구매 또는 공제 가입의 조치를 하도록 함
- 금융위원회는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최근 5년 이내에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함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1.15. ~02.26.

동일한 장소에 설치된 다수의 무선국 또는 동일한 시설자가 운용하는 다수의 무선국의 정기검사 시기를 일원화 하여 해당 무선국에 대한 검사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시설자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정기검사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이음5G 망 내에 개설되는 지능형 CCTV 등 고정형 단말기의 개설 절차를 대폭 완화하고, 중소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의 전액 감면을 2024년까지 1년 연장하되, 2025년부터는 단계적으로 부과하는 등 전파 분야의 규제를 개선하여 전파이용자의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무선국 정기검사 제도 개선 (안 제44조제2항제4호·제5호, 제45조제2항, 제101조제5항, 별표 13의2)
 - 동일한 장소에 설치된 무선국 또는 동일한 시설자가 운용하는 무선국의 정기검사 시기를 같은 시기로 조정할 수 있도록하고, 원래 검사 시기보다 검사를 앞당겨 받는 경우 검사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② 이음5G 단말기 개설 절차 완화 (안 제24조제1항제5호)
 - 건물 등 일정한 구역 내에서만 특정 주파수를 이용하는 이음5G망 내에서 사용되는 고정형 단말기(지능형CCTV, 스마트센서 등)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허가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신고를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
- ③ 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안 제90조제1항제1호·제2호)
 - 학교폭력 제로센터 내 학교폭력 사례회의를 신설하고 학교폭력 사례회의의 기능·구성 등을 정함
- ④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수수료 경감 (안 제98조의2, 별표 14의4)
 -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의 수수료 기준을 종전에는 방사성, 전도성 각각 단일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평가항목에 따라 세분화하여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수수료 완화
- ⑤ 지정시험기관 심사제도 합리화 (안 별표 14의3)
 - 적합성평가 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및 변경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종전에는 정액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신청 수수료에 노임단가와 출장여비 등을 합한 실비를 납부하도록 하여 심사 수수료를 완화하고, 시험기관의 심사비용 납부 절차 등을 고시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
- ⑥ 시행령 규정 정비 (안 제13조, 제40조, 제41조, 제123조의3)
 - 과태료 부과·징수 등 행정처분 시 업무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연락처, 주소 등) 활용 근거 마련

※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기획과](mailto:science@ktr.go.kr) (전화: 044-202-4924, 팩스: 044-202-6043)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01.12.
~02.21.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PC방 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인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24.3.22.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주요 내용으로는

①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기준 신설 (안 26조)

- PC방 영업자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과 관련하여 청소년이 신분증 위·변조·도용 및 폭행·협박 등을 통하여 그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PC방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② PC방 사업자의 준수사항 신설에 따라 이를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조항 신설 (안 별표5)

- PC방 영업자는 이용자가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준수사항 신설(법률 제28조제5의2)에 따라 이를 위반 시 적용할 행정처분 기준 조항 신설

※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전화: 044-203-2246, 팩스: 044-203-3465\)](tel:044-203-2246)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1.15.
~02.2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9조에 따른 부과금 및 과오납금의 환급·충당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사무 위탁기관에 포함하여 부과금과 과오납금의 환급 근거를 마련하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 및 수소 안전관리 사업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사업의 범위에 추가하여 특별회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사업의 범위 등 (안 제3조제1항)

- 현행 수소 사업에 대한 특별회계 지원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라 신에너지인 수소에너지에 대한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의 사업의 범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수소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할 필요

② 회계사무의 위탁 (안 제8조제1항~제3항)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부과금과 과오납금의 환급·충당에 관한 사무는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위탁되어 있으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의 회계사무 위탁기관에는 한국석유관리원이 제외되어 있어 명시할 필요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과 \(전화: 044-203-5128, 팩스: 044-203-4761\)](tel:044-203-5128)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1.15.
~02.26.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안전인증기관의 위탁업무 조정 등 현행 안전관리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안전인증기관 지정요건 완화 (안 제7조)

- 시험설비, 인력 등 충분한 역량을 갖춘 기관을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비영리 요건 삭제
- 시험설비 부담 완화를 위해 특수·고가 시험설비의 경우에는 외부 기관과 계약체결 허용

② 안전인증기관 위탁업무 조정 (안 제18조)

- 안전인증기관의 영리기관 허용에 따라 기존에 안전인증기관이 담당하는 공익 성격의 행정처분, 안전확인 신고 등 위탁업무를 공공기관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이관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mailto:sa@ktr.go.kr) (전화: 043-870-5441, 팩스: 043-870-5676)

환경부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1.17.
~02.06.

건설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 등의 위반을 저감을 위해 위반 사실 공표제가 법률 개정으로 도입되어 구체적 공표 사항,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구체적 공표 항목 (안 제27조의2제1항)

- 사업자의 종류, 명칭·소재지·대표자 성명, 구체적 위반행위, 처분내용(징역의 기간, 벌금액,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처분일

② 공표대상 결정 절차

- 법 제56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공표 여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에서 결정 (안 제27조의2제2항)
-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 (안 제27조의2제5항)

③ 공표 방식 및 기간 (안 제27조의2제3항)

- 환경부 및 지자체의 누리집에 1년간 공개, 연 1회 공표

④ 보고체계 마련 등

- 시·도지사는 위반사항을 환경부로 제출 (안 제27조의2제4항)
- 지자체에서 제출한 자료의 접수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게 위탁 (안 제29조제1항제3호)

⑤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누락된 제18조제2항 위반 시 과징금 조항 추가 (안 별표4제6호)

※ 문의처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전화: 044-201-7363, 팩스: 044-201-7376\)](tel:044-201-7363)

환경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1.19.
~02.29.

석면건축자재로부터 어린이의 건강보호를 위해 소규모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건축물석면조사를 의무화하고 자연발생석면 관리계획 수립 시 석면이 함유된 암석을 채취·판매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관리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며,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 중 나타난 일부 보완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지역아동센터의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확대 (안 별표1의2 제2호)

- 지역아동센터에 적용되고 있는 연면적 500㎡ 이상의 현행 면적 기준을 폐지하여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지역아동센터를 석면조사 대상으로 포함하되, 공포 후 1년부터 시행함

②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에 대한 석면비산·노출 저감조치 강화 (안 제23조제2호)

- 관리지역에 대한 석면안전 관리계획 수립 시 관리지역에서 석면이 함유된 암석을 채취·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한 관리방안 포함

③ 관리지역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확대 (안 제25조제1호)

- 관리지역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에 '지목변경'을 포함

※ 문의처 :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전화: 044-201-6803, 팩스: 044-201-6823\)](tel:044-201-6803)

환경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01.19.
~02.29.

석면 관련 환경부 운용 시험방법 고시 등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이관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석면 관련 환경부 운용 시험방법 고시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석면 조사연구 전문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 (안 제9조제3항 및 제28조제5항)

- 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분석에 필요한 시료의 채취 및 석면 분석 방법 고시를 환경부장관에서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위임

-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의 측정방법 고시를 환경부장관에서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위임

②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서식 등 수정 (안 별지 제19호, 제20호의2)

※ 문의처 :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tel:044-201-6803) (전화: 044-201-6803, 팩스: 044-201-6823)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1.18.
~01.25.

국토교통부 장관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9671호, 2023. 8. 16. 공포·시행)됨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 중인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업무를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노후·불량주택 신축 허용, 농업인용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 허용, 도로변 제설시설 설치범위 확대 등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업무 지방국토관리청 위임 (안 제40조제10항 등)

-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 중인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

②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가능한 정원 기준 명확화 (안 별표1제1호아목)

- 「수목원정원법」 개정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대상 정원의 종류를 조성주체 기준으로 변경

③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 내 건축물 신축시 진입로 설치 규제 완화 (안 제14조제9호)

- 집단취락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서 구역 지정 전 건축된 주택·근생시설 등을 다시 신축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구역 내 토지에 진입로 설치를 허용

④ 농업인용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 허용 (안 제19조제7의3)

-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인이 농지에 소규모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을 신고행위로 허용

⑤ 개발제한구역 내 제설시설 설치범위 확대 (안 별표1 제2호다목)

- 구역 내 일반국도·지방도 뿐만 아니라 고속국도, 광역시도 등을 포함한 간선도로에 불가피한 경우 제설시설의 설치를 허용

⑥ 이축·재축한 노후 주택·근생시설 신축 허용 (안 별표1 제5호다목 및 라목)

-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적법하게 설치된 주택·근생시설이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 1회에 한해 신축을 허용

⑦ 음식점 등의 부대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안 별표1 제5호라목)

- 휴게음식점 부지와 구거, 소로 등 소규모 선형시설로 분리된 토지에도 부대 주차장 설치를 일부 허용(현재는 경계가 맞닿은 토지에만 설치가 가능)

⑧ 물납허가 관련 위임규정 보완 (안 제40조제4항제2호)

-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징수업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보전부담금의 ‘물납 허용’ 지자체 위임사무에 포함

⑨ 유효기간 만료조문 삭제 등 (안 별표1 제1호바목가 및 제5호아목라)

- 실내체육관 관련 조문위치 변경사항 반영 및 실외체육시설 설치 주체 관련 유효기간 만료 조문을 삭제

⑩ 양성화된 군사시설의 형질변경 수반 증축 허용 (안 별표3 제57호)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된 형질변경 면적 범위 내에서 「국방시설사업법」에 따라 양성화 군사시설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증축을 허용

※ 문의처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전화: 044-201-3745, 팩스: 044-201-5574)

국토교통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1.19.
~01.29.

역세권개발사업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19682호, 2023. 6. 16. 공포·시행)으로, 개발구역 지정 단계에서 시행하던 지방의회 의견 청취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가 실시계획 승인 단계로 변경되었으므로 개발구역 지정 단계에서 지방의회 의견 청취 및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조문을 삭제하는 등 법 개정 내용에 맞추어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가 개발구역 지정 단계에서 실시계획 승인 단계로 변경(법 제6조, 제13조)됨에 따라 개발구역 지정단계에서 “지방의회” 관련 사항을 삭제 (안 제6조)
- ②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 규정이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결정으로 조정(법 제9조)됨에 따라 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사업계획 내의 도시·군관리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관련 사항을 삭제 (안 제9조)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 (전화: 044-201-3942, 팩스: 044-201-5594)

국토교통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01.19.
~01.29.

역세권개발사업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19682호, 2023. 6. 16. 공포·시행)으로,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 등에게 동의를 받던 것을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도록 본문과 단서 조문이 변경(법 제14조)됨에 따라 이에 맞춰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타인의 토지에 대한 출입 허가 사항이 법 제14조제2항의 단서에서 본문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규칙 조문에서 “단서”를 삭제 (안 제7조)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mailto:044-201-3942) (전화: 044-201-3942, 팩스: 044-201-5594)

3. 법률 발의(제출)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2024-01-16 발의

현행법은 법인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에 대하여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15년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가 등록 면허세의 비과세 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변경되었음에도 현행법에는 개정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납세자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를 등록면허세 비과세 제외 대상으로 규정 하려는 것임 (안 제25조)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2024-01-16 발의

현행법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고유식별정보 중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별도의 규정을 두어 더욱 엄격한 요건 하에서 처리하도록 하여 그 처리 제한을 강화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위반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형사처벌의 벌칙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보다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제한 위반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만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그 제재수준에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에 대하여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위반과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제재수준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안 제71조제5호, 제75조제2항제7호 삭제)

기획재정위원회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4-01-17 제출

이 법에 따른 부담금은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를 말하는데,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른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은 전기공급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의 성격을 띠고 있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은 해당 협회를 설립한 손해보험회사들이 납부하는 협회비로 볼 수 있어 이 법에 따른 부담금의 범위에서 제외함 (안 별표 제13호 및 제22호 삭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과 회수부과금은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하여 부담금운용계획서 작성 등 부담금 운용에 따른 행정부담을 경감 (안 별표 제70호 개정 및 제71호 삭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의원 등 11인)

2024-01-18 발의

현행법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부분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전망을 고려하였을 때 반도체 기술을 포함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장려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6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안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0인)

2024-01-19 발의

현행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금 또는 만기별 채권 등 보상 수단에 따라 감면되는 비율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 현재 현금에 대한 감면 비율은 세액의 10%로 규정되어 있고, 채권의 경우는 15%, 채권 중에서도 만기를 3년, 5년 이상으로 설정하는 경우는 시장 안정성에 기여하는 측면을 감안해 각각 30%, 40%까지 감면해주고 있음

하지만 해당 양도세에 대한 감면율은 지난 2009년부터 계속 하향 조정되어왔음. 이는 공공주택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등 공익적 목적의 토지주택 사업 수행을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한 취지를 고려할 때, 공익을 위한 기여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지적임. 또한 부동산시장에서 계속되는 과열 및 투기 양상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의 역량 강화 유인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를 포함해 무역조정기업의 사업전환, 영농조합 등 특수한 목적에 대한 양도세 감면 종합한도가 과세기간별로 1억원으로 되어 있으며, 5개 과세기간 범위에선 2억원으로 설정되어 있음. 하지만 이 또한 공공성에 이바지하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서 그 폭을 확장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 비율을 현행보다 10%씩 더 상향하고, 해당 양도소득을 포함한 양도세 종합한도를 1개 과세기간별 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5개 과세기간별 한도는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해 공익에 부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공익 참여의 유인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77조 및 제133조)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의원 등 11인)

2024-01-16 발의

행정부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안 제13조 및 제51조의2)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3인)

2024-01-18 발의

현행법은 다자녀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자녀를 출산한 부모에게 주택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자동차세나 재산세와 같은 보유세는 면제하지 않음

그러나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에도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잠정 합계 출산율이 0.72명으로 전 세계 최저를 기록하는 등 저출생이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매우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음. 따라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는 인구절벽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물론이고 국가소멸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피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18세 미만 3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 소유한 자동차세를 감면하고, 3명 이상의 자녀와 상시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하여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궁극적으로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의 취득세뿐만 아니라 자동차세 (2025년 12월 31일까지 과세분에 한함)도 면제함 (안 제22조의2)
- ②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로서 다자녀 양육자가 해당 자녀들과 상시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2025년 12월 31일까지 과세분에 한함)하고, 총 감면액은 100만원 이하로 함. 다만, 주택의 취득일(출산일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출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이거나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6조의6 신설)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 등 11인)

2024-01-17 발의

현행법은 의료기관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는 매년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보수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은 직역단체 등에 의해 실시되고 있음

통상 자격자에 대한 보수교육은 업무 전문성 향상, 직업윤리의식 고취 등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의료기사 등에 대한 보수교육은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직업 특성상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음

이에 의료기사 등에 대한 보수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주관하여 실시하는 것임을 법률에 명시하여 보수교육의 내실을 도모하고 관리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20조)

보건복지위원회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1인)

2024-01-18 발의

최근 고물가 추세에 따라 식품제조기업이 가격을 올리는 대신 그 용량이나 재료의 함량을 줄여 가격 인상효과를 노리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소비자들에게 이를 알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품의 용량이나 재료의 함량 등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제품의 포장지 등에 이를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건전한 거래질서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4조, 제6조의 2 신설)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2인)

2024-01-17 발의

현행법은 근로의 제공 장소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하지 않았지만 통념상 사업장에서 근로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원격근로제 등 유연근무가 시행되었고, 이후에도 기후 변화 등으로 다른 전염병의 확산이 있을 수 있으며 산업구조의 다변화로 근로형태, 평가보상체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응하여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취업규칙의 내용에 자택 등 근무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근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근로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고 기업이 근로시간과 임금체계를 유연화 할 수 있도록 하여 성장잠재력을 높여주려는 것임 (안 제93조 제1호)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 등 10인)

2024-01-17 발의

현행법은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이미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을 추진하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를 말함. 그런데 이러한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라 제출된 개발기본계획에 관한 의견 수렴 절차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이며,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한 설명 및 의견 수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인지 의문이 있음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확정될 경우 광범위한 지역에 개발계획의 영향이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함께 의견을 수렴하였더라도 현행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도록 함으로써, 개발계획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알리고 주민 의견을 반영해 개발계획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4조, 제15조 및 제25조)

국토교통위원회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조오섭의원 등 11인)

2024-01-18 발의

국토교통부장관은 동법에 따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고, 최근 제정된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군공항 등이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부지(종전부지)를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현재까지 지정된 사례가 없어, 특화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화단지의 지정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까지 확대하고,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되고 있는 특례 규정 일부를 특화단지에 준용하려는 것임

한편, 스마트도시 관련 민간제한사업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스마트도시 전문지원기관이 민간제한사업의 공모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이에 스마트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스마트도시협회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됨을 규정하는 한편 (안 제3조의 3),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관한 사항을 스마트도시종합계획 및 스마트도시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안 제4조 및 안 제8조),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해제 및 범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함 (안 제23조)
- ② 스마트도시협회의 업무에 민간제한사업의 공모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추가함 (안 제24조의2)
- ③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까지 확대하고,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되고 있는 규제특례 규정 일부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준용함 (안 제29조)

III. 국회 주요 의사일정(안)

1. 본회의 일정

구분	일시	내용
본회의	1/25(목) 14:00	제41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 상임(특별)위원회

구분		일시	내용
정무위	전체회의	1/22(월) 10:00	- 민생현안 및 정치테러사건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
행안위	전체회의	1/25(목) 10:00	- 현안질의
국토위	전체회의	1/25(목) 11:00	- 안건 처리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01/23(화) 10:00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노후 대책 실태조사 연구 결과 발표 토론회	한정애·강은미, 강성희 의원실 등	의원회관 8간담회실
	01/23(화) 14:00	국가 전력망 민영화 문제와 대안 모색	김성환·김희재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소회의실
	01/24(수) 14:00	[2024 디지털 정책포럼] - 2024년 디지털 트렌드 전망과 AI 생태계 조성 방안	윤두현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01/24(수) 14:00	남북관계 근본변화와 한반도 위기 이해 - 평화 해법 모색, 어떻게 할 것인가?	윤미향 의원실 등	의원회관 3세미나실
	01/24(수) 14:00	소방·보건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정책 세미나	이명수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01/25(목) 10:00	플랫폼 규제법 제정의 쟁점과 과제	강훈식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소회의실
	01/25(목) 14:00	간토학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의 의의와 방법	유기홍·강민정· 용혜인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세미나실
	01/26(금) 14:00	2024년 지속가능과 노동시장 구조 진단 포럼 - ESG 워싱과 저항, 도전 받는 인류의 미래	윤후덕·김성주 의원실 등	의원회관 3세미나실
자료집 등	1/24(수)	「World&Law」 제2024-2호 발간 - 농업, 스마트하게 혁신하려면?	국회도서관	
	1/24(수)	「금주의 서평」 제663호 발간 - 도서명 : 창조적 시선 - 저 자 : 김정운		
	1/25(목)	「THE 현안」 제1호 발간 - 2024년 트렌드		
	1/25(목)	「현안, 외국에선?」 제75호 발간 - 네덜란드의 농업혁신과 지속가능한 농식품 미래를 위한 노력		
	1/22(월) 14:00	국민연금 개혁 관련 전문가 간담회 - 국민연금 과거 개혁의 성과 평가 및 주기적 연금개혁 실시 방안	국회예산정책처	의정관 406호
	1/24(수) 10:00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관련 전문가 간담회		의정관 406호
	1/24(수) 14:00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전문가 간담회		의정관 505호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1]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18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1/15(월) 10:00	포털뉴스 검색서비스 개편 관련 정책토론회	민형배·장경태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세미나실
	1/17(수) 14:00	국가100년대계 긴급토론회 - 저출산 재앙, '국가비상사태선언'으로 극복하자	홍석준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소회의실
자료집 등	1/15(월)	「이달의 입법민원」 (2023. 12월호) 발간	국회사무처	
	1/17(수)	「금주의 서평」 제662호 발간 - 도서명 : 민주주의에 반대한다 - 저 자 : 제이슨 브레넌	국회도서관	
	1/18(목)	「현안, 외국에선?」 제74호 발간 - 국제질서 변화와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		
	1/16(화)	「이슈와논점」 2175호 발간 - 영국의 「고정임기 의회법」 폐지와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1/16(화)	「NARS 현안분석」 314호 발간 - 물관리 분야 기후위기 대응 입법 현황 및 향후 과제		
	1/17(수)	「이슈와논점」 2176호 발간 - 맞춤형 자치모델, 특별자치시·도의 출범 현황과 과제		
	1/19(금)	「이슈와논점」 2177호 발간 - 조선노동당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분석과 2024년 남북 관계 전망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01.15.~01.21.)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1/16(화)	공정거래	2024년 새롭게 바뀌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
1/16(화)	해외규제	미국,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 강화된 2차 제재 부과: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은 제재 컴플라이언스 강화에 대비해야
1/18(목)	형사	美 반부패법, 외국공무원도 직접 미국서 처벌
1/18(목)	ESG	주요 글로벌 ESG 규제 동향과 2024년 전망
1/19(금)	환경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
1/19(금)	통상관세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규제 움직임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광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안현정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성재열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백운일 | 전문위원

[이메일주소](#)

SHIN&KIM

법무법인(유) 세종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